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190
----------	-----

2023. 6. 13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6. 8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. 6. 8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6. 13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2021. 10. 19.), 시행(2022. 4. 20.)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·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가맹점 등록 신청 단서 조항 신설 및 불필요 조항 삭제(안 제9조제2항·제3항)
-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(안 제9조제4항)
- 법령 용어 정비(안 제5조의제4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,

주요개정 내용중 안 제4조의2는 운영자금의 보호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시 금고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확인 결과 우리시는 법 시행일에 맞춰('22. 4.20.) 시로 자금을 이관 조치('22. 4.19) 완료하였으며,

안 제9조 제2항은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카드사 등과 가맹점 등록 등을 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